



: 2018-03-06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노3518 강제추행[일부 인정 및 일부 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서혜선(기소),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고단611 판결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 2018-03-06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 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둔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하여 들은 단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③ 피고인은 D예술단 국악관현악단의 부지휘자 겸 악장, 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면서 위 악단 소속 단원인 피해자들의 고용관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신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가 인정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4. 2.경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무실에는 F를 비롯한 여러 단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출석부에 연가 등에 관하여 기재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시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위 악단에는 단원들이 출근하면서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공소사실 기재 '출석부'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와 연가·반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개인별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근무상황부는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고 개인별 근무상황부는 주로 총무가 관리하면서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연가·병가 일수를 근무상황부의 연가·병가 란에 옮겨 기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근시간에는 여러 단원들이 함께 카풀로 출근하기 때문에 출석부에 서명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4. 5.경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다. 그런데 당시 대합주실에는 여러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대합주실에 많은 단원들이 있었으나 추행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대합주실에 함께 있었던 단원 G은 다른 단원들이 대합주실 여러 군데 군데 몰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G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상한 동작을 하였다는 것만 들었을 뿐 그 외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듯이 툭툭 쳤다는 것에 불과하여 신체 접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접촉의 태양과 정도도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 동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6.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 2018-03-06

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원들과 함께 청수골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탑승한 승용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누구인지, 함께 동승한 단원들이 누구인지, 함께 동승한 단원들의 좌석 배치가 어떠하였는지 등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단원들이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다른 단원들에게 그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단원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90. 11.경부터 약 25년간 D예술단 국악관현악단에서 근무해 오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악단의 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단원들인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 2018-03-06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고영식 _____

판사 이혜선 _____